

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5. 2. 14.>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·공사의

[] 착수
[] 완료

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2일 시·도 1일
신 고 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대 상 자연유산	명칭		종류		
	소재지(보관 장소)				
보호구역·보호물					
행 위 내 용	명칭				
	내용				
착 수 연 월 일			완료(예정) 연월일		
허가, 명령 연월일			허가, 명령의 내용		
공 사 내 용 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	업 체 명		공 사 금 액		
	감독자명		원		
그 밖의 사 항				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6호·제21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·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·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·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설공사의 []착수 []완료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: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: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